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1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양부남 · 김현정 · 민병덕
민형배 · 안도걸 · 이강일
이해식 · 정준호 · 조계원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를 “해당 금액을 이후 해당”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감액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회수가 어려울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회수 방법이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u>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u>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① ----- ----- <u>해당 금액을 이후 해당</u> ----- ----- <u>감액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회수가 어려울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u><신설></u>	<u>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u>
<u><신설></u>	<u>④ 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회수 방법이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②-----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u>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u> ③ · ④ (생략)	----- ----- ----- <u>관할 세무서장에</u> <u>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u> <u>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u> <u>징수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